□ 추가설器여부에 따른 분류

■ 단위형 (Unit Type)

一點收件 진의 新樹이 對堂

기설정된 투자신탁에 원본액을 추가로 증액하여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없는 상품이며, 일반적으로 신탁기간을 정합니다. 원칙적으로 단위형투자신탁은 펀드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하므로 신탁기간중 안정된 운용에 용이하며,특히 공사채형의 경우 만기 목표수익율을 중간의 금리변동과 관계없이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

추가형

동일한 신탁계약으로 추가적인 설정이 자유로운 형태로써 추가적인 수익권의 취득이 가능하며 신탁재산의 원본증액이 이루어집니다.

단위형 [單位型]

<u>펀드</u>의 유형으로 <u>단위형</u>은 <u>모집</u>방식에 따른 구분이다.

일정<u>기간</u>을 정해놓고 이 <u>기간</u> 동안 고객(<u>투자자</u>)으로부터 <u>펀드</u>를 <u>모집</u>하는 것을 <u>단위형</u>이라고 한다.

단위형의 반대는 추가형이다.

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펀드에 돈을 추가로 투자할 수 있다.

현재 대부분의 <mark>수익증권</mark>이 추가형으로 이뤄져 있다.

■ 운용대상 유가증권에 따른 분류

是到前部17-1-34% 新期17-1-34%

주식투자신탁

약관(정관)상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신탁재산의 60%이상을 투자하는 상품 * 보유한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주식으로의 전환 및 신주인수가 가능합니다.

채권투자신탁

- 약관(정관)상 주식(주식관련 파생상품 포함)이 포함되지 아니하고,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신탁재산의 60%이상을 투자하는 상품
 - *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 사채 보유는 가능하되, 주식으로의 전환 및 신주인수는 불가능합니다.
- 규정상 MMF의 경우에도 채권투자신탁의 범주에 포함되나, 편의상 실무적으로는 별도 구분하고 있습니다.

혼합투자신탁

주식투자신탁 및 채권투자신탁 이외의 상품으로 신탁재산을 주식, 채권등에 적절히 배분하여 운용하는 상품

- 주식혼합형: 신탁재산을 주로 주식등에 투자하는 상품(약관상 주식최고편입비율이 50%이상인 상품)
- 채권혼합형: 신탁재산을 주로 채권등에 투자하는 상품(약관상 주식최고편입비율이 50%미만인 상품)

■ 조직형태에 따른 분류

■ 계약형(Contractual Type) 선택의 법률관계가 존개할

약관(정관)상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신탁재산의 60%이상을 투자하는 상품

* 보유한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주식으로의 전환 및 신주인수가 가능합니다.

(가) 위탁자(manager)

투자신탁 설정의 주체로서 투자신탁을 창설하고 투자신탁의 지분권을 나타내는 수익증권을 발행, 매출하며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예탁하고 이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자를 말함

- 신탁약관의 작성
- 신탁계약 체결과 해지
- 수익증권 발행, 매각 및 환매
- 신탁재산의 취득, 매각 등의 지시
- 신탁재산의 편입,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지시
-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및 기준가격의 공고
- 신탁재산에 관한 공고

(나) 수탁자(Trustee)

수탁자는 신탁기관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은 유가증권이나 예금을 관리하고 수익증권의 발행을 인증하며 기타 신탁 재산에 관련되는 신탁사무 및 회계사무를 취급

(다) 수익자(Beneficiary)

신탁재산의 운용결과의 이익을 받는 투자자를 말하고 일반투자자는 수익증권 매입에 의해서 투자신탁에 참가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환매 또는 상환에 의하여 계약에서 이탈하게 됩니다.

■ 회사형(Corporate Type) (유형 펀드)

회사형은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주식을 발행하여 일반대중에게 취득시키고, 그 운용이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 입니다,즉 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회사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 적용되고있습니다.

회사형과 계약형의 차이

회사형의 경우에는 회사정관에 의하여 운용되고 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 이를 취득한자는 주권이 주어지나, 계약형의 경우에는 신탁약관에 의하여 운영되고 주식 발행을 할 수 없으므로 수익증권 취득자는 수익에 대한 권리만 있을 뿐 주권이 없음.

■ 환매가능여부 에 따른 분류

폐쇄형 (Closed-End)

수익증권 또는 주식(회사형의 경우)의 환매가 불가능하므로 장외시장에 등록시켜 시장거래를 통하여 환금성을 유지시킵니다.

■ 개방형 (Open-End)

수익증권 또는 주식(회사형의 경우)의 환매가 자유롭기 때문에 증권의 소지자 입장에서는 환금성이 확보됩니다.